◉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2-105호

# 신당제9주택재개발정비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(경미한 사항)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390호(2010.11.4.)로 신당제9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60호(2020.2.13.)로 신당제9주택재개발정비구역 (변경)지정 및 정비계획(지구단위계획) (변경)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102호(2021.09.01.)로 신당제9주택재개발정비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(경미한 사항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2동 432-1008번지 일대 신당제9주택재개발정비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4조, 같은법시행령 제13조,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」 제11조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(경미한 변경) 결정 처리하고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6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에 따라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2년 11월 9일

**서울특별시 중구청장**

Ⅰ.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

1. 서울특별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(주택재개발사업부문)(변경없음)

| 구분 | 생활권 유형 | 구역 번호 | 동명 | 지번 | 면적 (ha) | 건폐율 | 용적률 | 층수 | 추진 단계 | 사업 시행방식 | 정비 유형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기정 | A | 5 | 신당2 | 432-1008 | 1.9 | 60% | 170% | 7층 이하, 28m 이하 | 1 | 주택 재개발 | 전면 개발 |

2. 정비구역 지정 조서(변경없음)

| 구분 | 정비사업 명칭 | 위치 | 면적(㎡) | | | 비고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| 기정 | 증·감 | 변경후 | |
| 기정 | 신당 제9 주택재개발정비구역 |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2동 432-1008번지 일대 | 18,651 | - | 18,651 | - |

3. 토지이용계획(변경)

| 구 분 | 명 칭 | 면 적(㎡) | | | 비율(%) | 비 고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기 정 | 증·감 | 변경후 | | |
| 합 계 | | 18,651.0 | - | 18,651.0 | 100.00 | |
| 정비기반 시설 | 소 계 | 391.0 | 감) 16.0 | 375.0 | 2.01 | |
| | 도 로 | 391.0 | 감) 16.0 | 375.0 | 2.01 | |
| 획 지 | 소 계 | 18,260.0 | 증) 16.0 | 18,276.0 | 97.99 | |
| | 획지 1 | 17,559.0 | 증) 113.0 | 17,672.0 | 94.75 |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) |
| | 획지 2 | 604.0 | - | 604.0 | 3.24 | 존치 |
| | 획지 3 | 97.0 | 감) 97.0 | - | - | |

주1)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46조(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), 「도시계획조례」제19조의2(공공시설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 산정방법) 등에 의거,
-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(환산면적 총 1,096.02㎡, 연면적 1,131.92㎡, 관리청: 중구청)

4. 용도지역·지구 결정 조서(변경없음)

가. 용도지역 결정 조서(변경없음)

| 구 분 | 면 적(㎡) | | | 비율(%) | 비 고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기 정 | 증·감 | 변경후 | | |
| 합 계 | 18,651.0 | - | 18,651.0 | 100.0 | |
| 제2종일반주거지역(7층이하) | 14,965.0 | - | 14,965.0 | 80.2 | |
| 제3종일반주거지역 | 3,686.0 | - | 3,686.0 | 19.8 | |

나. 용도지구 결정 조서(변경없음)

| 구분 | 지구명 | 지구의 세분 | 위치 | 고도제한 내용 | 면적(㎡) | 최초결정일 | 비고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기정 | 남산 주변 | 최고 고도 지구 | 중구 남창동, 회현동1·2·3가, 남산동1·2가, 주자동, 남학동, 묵정동, 필동2·3가, 장충동2가, 신당동일대 용산구 후암동, 이태원동, 용산2가동, 한남동 일대 | 20m이하 (완화시 28m 이하) | 1,434,425 (18,651) | `96.4.6 (서고 93호) | ①〈완화시 기준〉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 ② 표면(건축법령적용)으로부터 건물 최상단까지의 높이(단, 필로티부분은 높이에 포함하되, 계단실 및 엘리베 이터 면적 범위내 높이 3m 이내의 계단탑 및 엘리베이 터탑은 제외) |

주1) 2008년 제18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(2008.11.5.)를 통해 최고고도지구 완화(5층 20m이하 → 7층 28m이하) 받은 사항임

주2) ( )안은 정비계획구역 내 사항임(구역 면적 18,651㎡)

5. 도시계획시설 결정(변경)조서

가. 도로 결정(변경)조서

| 구분 | 규모 | | | | 기능 | 연장 (m) | 기점 | 종점 | 사용 형태 | 주요 경과지 | 최초 결정일 | 비고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등급 | 류별 | 번호 | 폭원 (m) | | | | | | | | |
| 기정 | 대로 | 2 | 93 | 28~32 | 보조간선 | 4,890.0 (98.0) | 삼각지광장 | 약수역 | 일반도로 | - | - | |
| 기정 | 소로 | 3 | 5 | 4 | 국지도로 | 156.0 (10) | 신당2동 432-2023 | 신당2동 432-496 | 일반도로 | - | 중고22호 (1995.5.24) | |
| 변경 | 소로 | 3 | 5 | 4 | 국지도로 | 156.0 (10) | 신당2동 432-2023 | 신당2동 432-496 | 일반도로 | - | 중고22호 (1995.5.24) | |
| 폐지 | 소로 | 3 | 7 | 6 | 국지도로 | 16.0 | 신당2동 432-1434 | 신당2동 432-1435 | 일반도로 | - | - | |

■ 변경 사유서

| 구분 | 변경전 도로명 | 변경후 도로명 | 변경내용 | 변경사유 |
|---|---|---|---|---|
| 변경 | 소로 3-5 | 소로 3-5 | · 구역내 포함면적 변경<br>- 6.0㎡ → 21.0㎡ (증 15㎡) | · 도로경계선 조정에 따른 선형 및 면적변경 |
| 폐지 | 소로 3-7 | 소로 3-7 | · 폐지 | · 존치부지(획지3)의 공동개발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폐지 |

6.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(변경)

| 구분 | 시설의 종류 | 위치 | 면 적(㎡) | | | 비고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| 기 정 | 증·감 | 변경후 | |
| 변경 | 경로당 | 획지1 | 263.9 | 감) 38.5 | 225.4 | 지반조사에 따른 면적변경 (지하층) |
| 변경 | 작은 도서관 | 획지1 | 136.0 | 감) 27.6 | 108.4 | |
| 변경 | 주민운동 시설 | 획지1 | 377.7 | 감) 49.0 | 328.7 | |
| 변경 | 기타주민 공동시설 | 획지1 | 566.9 | 감) 373.2 | 193.7 | |
| 기정 | 어린이 놀이터 | 획지1 | 519.0 | - | 519.0 | |
| 소계 | | | 1,863.5 | 감) 488.3 | 1,375.2 | |
| 변경 | 경비실 | 획지1 | 13.3 | 증) 13.9 | 27.2 | |
| 변경 | 관리 사무소 | 획지1 | 76.0 | 감) 0.6 | 75.6 | |

주1)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55조의2(주민공동시설) 제3항에 의거 지역특성, 시설설치 현황 등을 고려할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설치할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
-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(환산면적 총 1,096.02㎡, 연면적 1,131.92㎡, 관리청: 중구청)

7. 기존 건축물의 정비·개량 계획(변경)

| 구분 | 구역구분 | | 위치 | 정비개량계획(동) | | | | | 비고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명칭 | 면적(㎡) | | 계 | 존치 | 개수 | 철거후 신축 | 철거 이주 | |
| 기정 | 신당제9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| 18,651 | 신당2동 432-1008번지일대 | 123 | 2 | - | 121 | - | |
| 변경 | 신당제9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| 18,651 | 신당2동 432-1008번지일대 | 123 | 1 | - | 122 | - | 획지3(존치) 폐지 |

8. 건축시설계획(변경)

가. 획지 및 주택규모 등에 관한 계획

| 결정구분 | 구역구분 | | 획지구분 | | 위치 | 주용도 | 건폐율(%) | 용적율(%) | 높이(층수)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명칭 | 면적(㎡) | 명칭 | 면적(㎡) | | | | | |
| 기정 | 신당제9 주택 재개발 | 18,651 | 획지1 | 17,559 | 신당2동 432-1008번지 일원 |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| 60% 이하 | 182% 이하 | 28m이하 (7층이하) |
| | | | 획지2 | 604 | 신당2동432-695 | 존치 | 관계법령에 따름 | | |
| | | | 획지3 | 97 | 신당2동432-2054 | | | | |
| 변경 | 신당제9 주택 재개발 | 18,651 | 획지1 | 17,672 | 신당2동 432-1008번지 일원 |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| 60% 이하 | 182% 이하 | 28m이하 (7층이하) |
| | | | 획지2 | 604 | 신당2동432-695 | 존치 | 관계법령에 따름 | | |

※ 용적률 계획 참고

**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(변경)**

▸ 주택공급계획 : 315세대

▸ 건립규모

| 건립규모 | | 기정 | 증감 | 변경 | 비율(%)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합 계 | | 315 | - | 315 | 100.00 |
| 85㎡이하 | 60㎡이하 | 173 | 감) 6 | 167 | 53.02 |
| | 60㎡초과~85㎡이하 | 142 | 증) 6 | 148 | 46.98 |

▸ 임대주택 건설계획 : 해당 없음

- 근거 :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-102호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제4조 제4항 제2호 (국토교통부 2018.02.09)

**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(변경없음)**

▸ 건축한계선 지정 : 건축한계선으로 발생하는 전면공지는 보도로 조성

| 구 분 | 건축선 지정 내용 | 계획목표 |
|---|---|---|
| 대상지 동측(다산로) |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| 보도 설치 (3m) |
| 대상지 북측(6m 도로) |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| 보도 설치 (2m) |

나. 용적률 계획

<table>
<tr><th colspan="2">구분</th><th colspan="6">산정내용</th></tr>
<tr><td rowspan="7">기정</td><td rowspan="3">토지이용계획</td><td rowspan="2">대지면적</td><td colspan="5">공공시설 부지 제공 면적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신설 기반시설</td><td rowspan="2">신설 기반시설내 국·공유지</td><td rowspan="2">대지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·공유지</td><td rowspan="2">공공시설 설치 환산부지면적</td></tr>
<tr><td>순부담적용</td><td>순부담제외</td></tr>
<tr><td>18,260.0㎡</td><td>100.0㎡</td><td>291.0㎡</td><td>123.3㎡</td><td>-</td><td>967.39㎡</td></tr>
<tr><td>공공시설 부지 제공면적 (순부담)</td><td colspan="6">• 공공시설 부지제공 면적<br>= 신설 기반시설(순부담 적용) – 신설 기반시설내 국·공유지 - 획지내 용도폐지되는 기존기반시설 국·공유지<br>= 100.0㎡ + 967.39㎡ – 123.3㎡ - 0 = 944.09㎡</td></tr>
<tr><td>공공시설 (건축물) 설치환산 부지면적</td><td colspan="6">• 환산부지면적<br>= (표준건축비 × 연면적) ÷ 부지가액 = (2,820,000원/㎡ × 998.3㎡) ÷ 4,403,589원/㎡ = 639.3㎡<br>• 대지지분면적<br>= (대지(획지1)면적 × 어린이집 연면적) ÷ 전체연면적<br>= (17,559㎡ × 998.3㎡) ÷ 53,482.19㎡ = 328.09㎡<br>⇒ 공공시설(건축물)설치 환산부지면적 = 639.3㎡ + 328.09㎡ = 967.39㎡</td></tr>
<tr><td>기준용적률</td><td colspan="6">• 기준용적률 = 170%</td></tr>
<tr><td>허용용적률</td><td colspan="6">• 허용용적률 = 170%</td></tr>
<tr><td>상한용적률</td><td colspan="3">• 기준/허용 용적률 : 170%<br>• 상한(개발가능)용적률<br>= 허용용적률+(기준용적률 × 1.3 × α)<br>= 170% + (170% × 1.3 × 0.0546)<br>= 182.07%<br>• 정비계획 용적률 = 182%</td><td colspan="3">*α =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한 나머지면적 대비 공공시설로 제공한 면적비<br>= (944.09㎡) / (18,260㎡ - 967.39㎡)<br>= 0.0546<br>*β =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(우수디자인, 친환경 계획, 에너지 절약 등)</td></tr>
<tr><td rowspan="7">변경</td><td rowspan="3">토지이용계획</td><td rowspan="2">대지면적</td><td colspan="5">공공시설 부지 제공 면적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신설 기반시설</td><td rowspan="2">신설 기반시설내 국·공유지</td><td rowspan="2">대지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·공유지</td><td rowspan="2">공공시설 설치 환산부지면적</td></tr>
<tr><td>순부담적용</td><td>순부담제외</td></tr>
<tr><td>18,276.0㎡</td><td>-</td><td>375.0㎡</td><td>123.3㎡</td><td>-</td><td>1,096.02㎡</td></tr>
<tr><td>공공시설 부지 제공면적 (순부담)</td><td colspan="6">• 공공시설 부지제공 면적<br>= 신설 기반시설(순부담 적용) – 신설 기반시설내 국·공유지 - 획지내 용도폐지되는 기존기반시설 국·공유지<br>= 0㎡ + 1,096.02㎡ – 123.3㎡ - 0 = 972.72㎡</td></tr>
<tr><td>공공시설 (건축물) 설치환산 부지면적</td><td colspan="6">• 환산부지면적<br>= (표준건축비 × 연면적) ÷ 부지가액 = (2,820,000원/㎡ × 1,131.92㎡) ÷ 4,403,589원/㎡ = 724.87㎡<br>• 대지지분면적<br>= (대지(획지1)면적 × 어린이집 연면적) ÷ 전체연면적<br>= (17,672㎡ × 1,131.92㎡) ÷ 53,895.23㎡ = 371.15㎡<br>⇒ 공공시설(건축물)설치 환산부지면적 = 724.87㎡ + 371.15㎡ = 1,096.02㎡</td></tr>
<tr><td>기준용적률</td><td colspan="6">• 기준용적률 = 170%</td></tr>
<tr><td>허용용적률</td><td colspan="6">• 허용용적률 = 170%</td></tr>
<tr><td>상한용적률</td><td colspan="3">• 기준/허용 용적률 : 170%<br>• 상한(개발가능)용적률<br>= 허용용적률+(기준용적률 × 1.3 × α)<br>= 170% + (170% × 1.3 × 0.0566)<br>= 182.50%<br>• 정비계획 용적률 = 182%</td><td colspan="3">*α =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한 나머지면적 대비 공공시설로 제공한 면적비<br>= (972.72㎡) / (18,276㎡ - 1,096.02㎡)<br>= 0.0566<br>*β =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(우수디자인, 친환경 계획, 에너지 절약 등)</td></tr>
</table>

※ 2019년 제20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견에 따라 대상지 동쪽 다산로변 완화차로는 순부담에서 제외

■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: 해당없음(변경없음)

○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-102호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(국토교 통부 2018.2.9.) 3-2의 (2)“도시관리계획 상 자연경관지구 및 최고고도지구 내에서 7 층 이하의 층수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을 건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.”에 의거하여 본 구역은 최고고도지구 내에서 7층 이하의 층수제한을 받게 되므로 임대 주택을 건립하지 않음.

9. 환경보전,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및 환경성 검토결과(변경없음)

가.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(변경없음)

나. 환경성 검토결과(변경없음)

10. 정비사업 시행계획(변경없음)

11.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(변경없음)

12.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(변경없음)

Ⅱ.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

1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

가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(변경없음)

| 구분 | 정비사업 명칭 | 위치 | 면적(㎡) | | | 비고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| 기정 | 증·감 | 변경후 | |
| 기정 | 신당 제9 주택재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|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2동 432-1008번지 일대 | 18,651 | - | 18,651 | |

2.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

가. 용도지역·지구 결정 조서(변경없음)

■ 용도지역 결정 조서 (변경없음)

| 구 분 | 면 적(㎡) | | | 비율(%) | 비 고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기 정 | 증·감 | 변경후 | | |
| 합 계 | 18,651.0 | - | 18,651.0 | 100.0 | |
| 제2종일반주거지역(7층이하) | 14,965.0 | - | 14,965.0 | 80.2 | |
| 제3종일반주거지역 | 3,686.0 | - | 3,686.0 | 19.8 | |

■ 용도지구 결정 조서 (변경없음)

| 구분 | 지구명 | 지구의 세분 | 위치 | 고도제 한내용 | 면적(㎡) | 최초결 정일 | 비고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기정 | 남산 주변 | 최고 고도 지구 | 중구 남창동, 회현동1·2·3가, 남산동1·2가, 주자동, 남학동, 묵정동, 필동2·3가, 장충동2가, 신당동일대 용산구 후암동, 이태원동, 용산2가동, 한남동 일대 | 20m이하 (완화시 28m 이하) | 1,434,425 (18,651) | `96.4.6 (서고 93호) | ①〈완화시 기준〉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 ② 표면(건축법령적용)으로부터 건물 최상단까지의 높이(단, 필로티부분은 높이에 포함하되, 계단실 및 엘리베 이터 면적 범위내 높이 3m 이내의 계단탑 및 엘리베이터탑은 제외) |

주1) 2008년 제18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(2008.11.5.)를 통해 최고고도지구 완화(5층 20m이하 → 7층 28m이하) 받은 사항임

주2) ( )안은 정비계획구역 내 사항임

나. 기반시설 결정(변경) 조서

1) 도로 결정(변경)조서

| 구분 | 규모 | | | | 기능 | 연장 (m) | 기점 | 종점 | 사용 형태 | 주요 경과지 | 최초 결정일 | 비고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등급 | 류별 | 번호 | 폭원 (m) | | | | | | | | |
| 기정 | 대로 | 2 | 93 | 28~32 | 보조간선 | 4,890.0 (98.0) | 삼각지광장 | 약수역 | 일반도로 | - | - | |
| 기정 | 소로 | 3 | 5 | 4 | 국지도로 | 156.0 (10) | 신당2동 432-2023 | 신당2동 432-496 | 일반도로 | - | 중고22호 (1995.5.24) | |
| 변경 | 소로 | 3 | 5 | 4 | 국지도로 | 156.0 (10) | 신당2동 432-2023 | 신당2동 432-496 | 일반도로 | - | 중고22호 (1995.5.24) | |
| 폐지 | 소로 | 3 | 7 | 6 | 국지도로 | 16.0 | 신당2동 432-1434 | 신당2동 432-1435 | 일반도로 | - | - | |

■ 변경 사유서

| 구분 | 변경전 도로명 | 변경후 도로명 | 변경내용 | 변경사유 |
|---|---|---|---|---|
| 변경 | 소로 3-5 | 소로 3-5 | · 구역내 포함면적 변경<br>- 6.0㎡ → 21.0㎡ (증 15㎡) | · 도로경계선 조정에 따른 선형 및 면적변경 |
| 폐지 | 소로 3-7 | 소로 3-7 | · 폐지 | · 존치부지(획지3)의 공동개발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폐지 |

3.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

가.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(변경) 조서

| 구 분 | 명 칭 | 면 적(㎡) | | | 비율(%) | 비 고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기 정 | 증·감 | 변경후 | | |
| 획 지 | 소 계 | 18,260.0 | 증) 16 | 18,276.0 | 97.99 | |
| | 획지 1 | 17,559.0 | 증) 113 | 17,672.0 | 94.75 |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) |
| | 획지 2 | 604.0 | - | 604.0 | 3.24 | 존치 (업무시설) |
| | 획지 3 | 97.0 | 감) 97 | - | - | 폐지 |

주1)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46조(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), 「도시계획조례」제19조의2(공공시설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 산정방법) 등에 의거, 국공립어린이집 설치(환산면적 총 1,096.02㎡, 연면적 1,131.92㎡, 관리청: 중구청)

나. 건축물의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에 관한 결정조서

1)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(변경없음)

2) 건축물 개발밀도(건폐율, 용적률, 높이)

가) 건폐율 계획(변경없음)

나) 용적률 계획 (변경)

| 구분 | | 용적률 | | | 비고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기준용적률 | 허용용적률 | 상한용적률 | | |
| 기정 | 획지1 | 170% 이하 | 190% 이하 | 250% 이하 | 정비계획 | 기준/허용용적률 : 170%<br>상한용적률 : 182% |
| | 획지2 | 관계법령에 의함 | | | 존치 | |
| | 획지3 | | | | 존치 | |
| 변경 | 획지1 | 170% 이하 | 190% 이하 | 250% 이하 | 정비계획 | 기준/허용용적률 : 170%<br>상한용적률 : 182% |
| | 획지2 | 관계법령에 의함 | | | 존치 | |

다) 높이 계획 (변경없음)

다.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(변경없음)

라.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 조서(변경없음)

Ⅲ.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도서 : 생략

Ⅳ. 열람장소 :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재생과 (☎02-3396-5722)에 관련도서를 비치하고 열람

첨부) 관련도면

1. 정비구역 결정도(변경없음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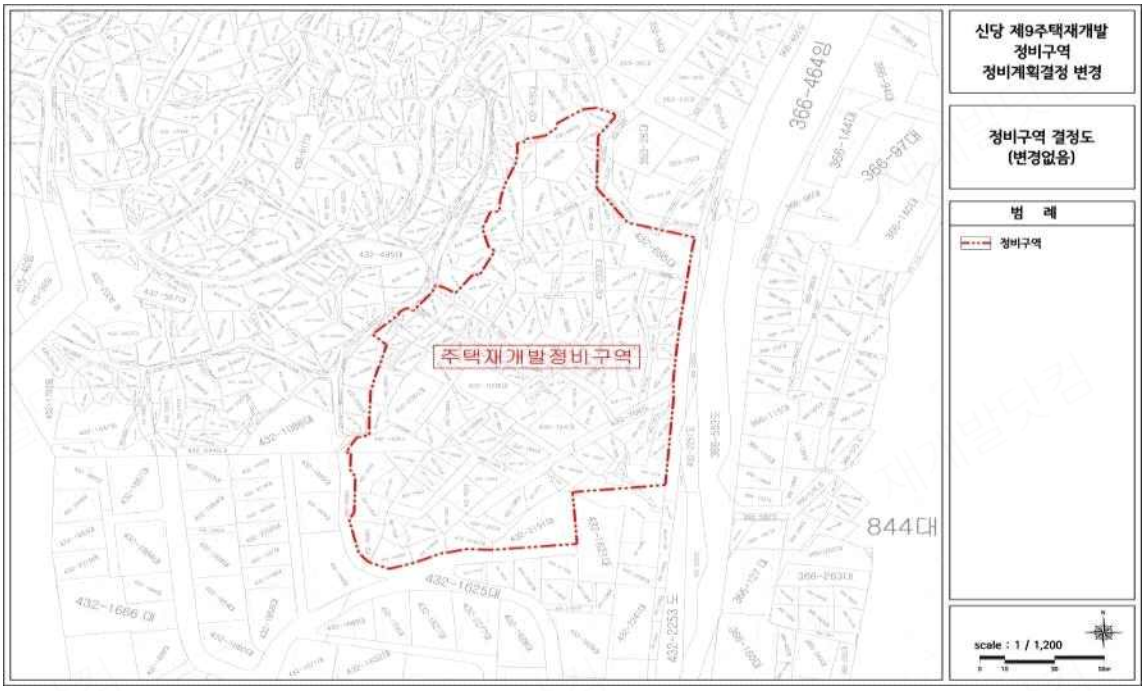


2. 용도지역 결정도(변경없음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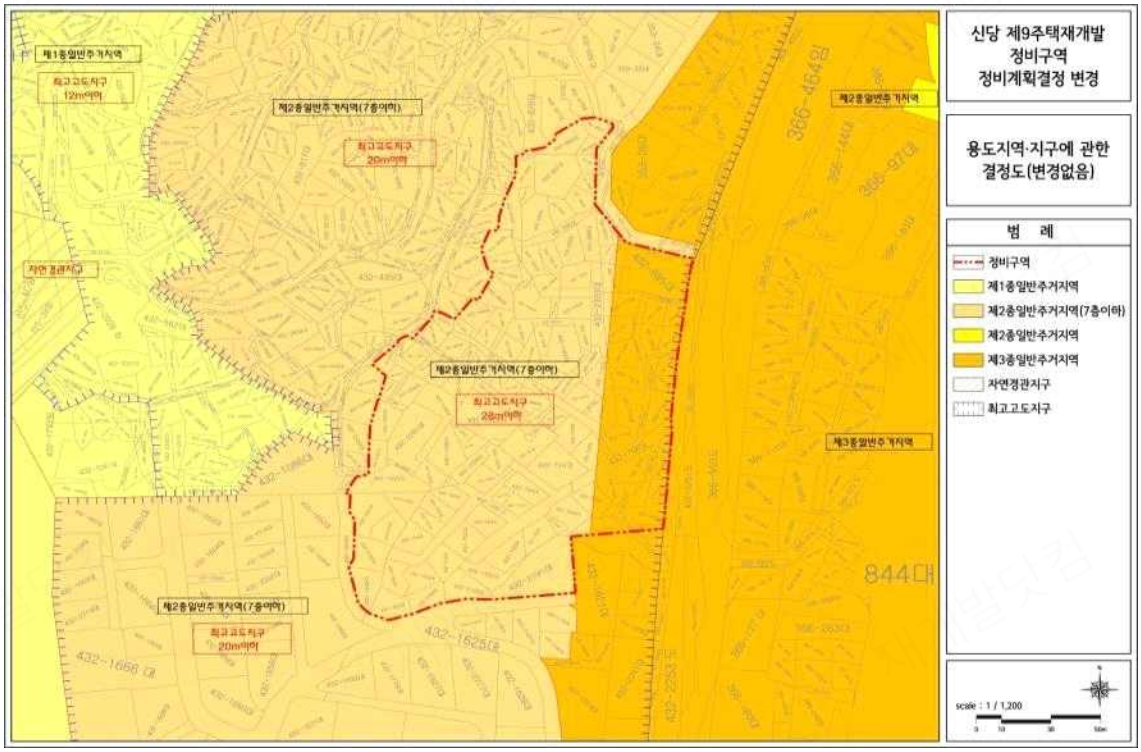

3. 도시계획시설 결정도(기정/변경)

■ 기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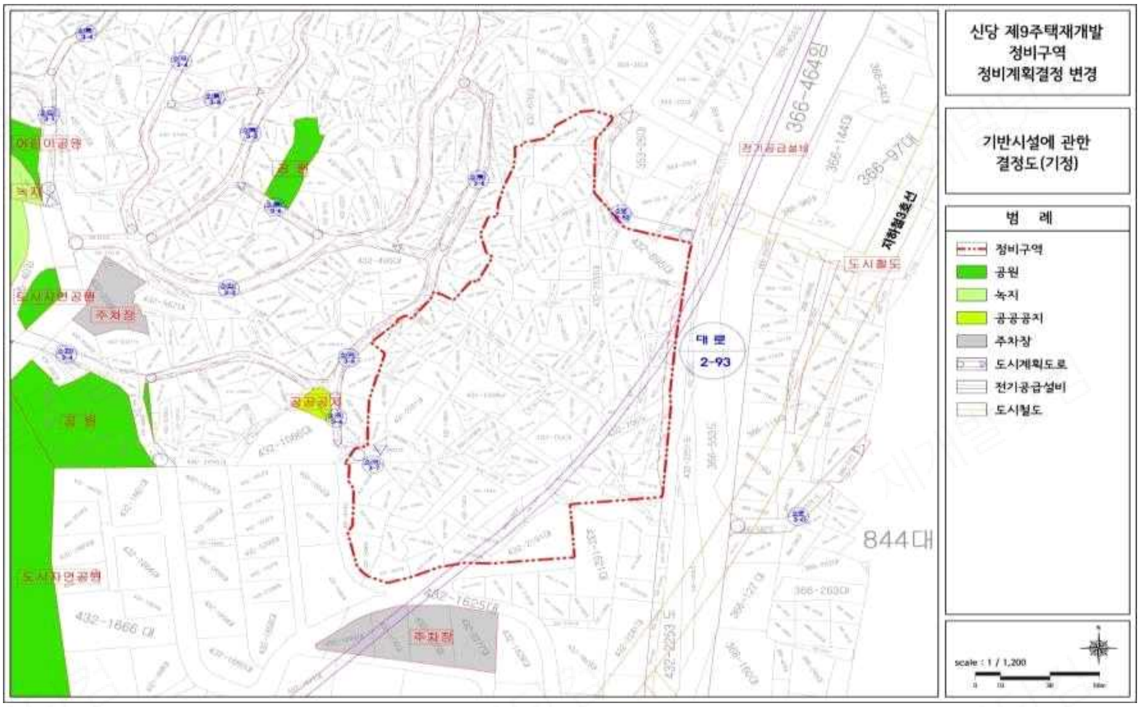


■ 변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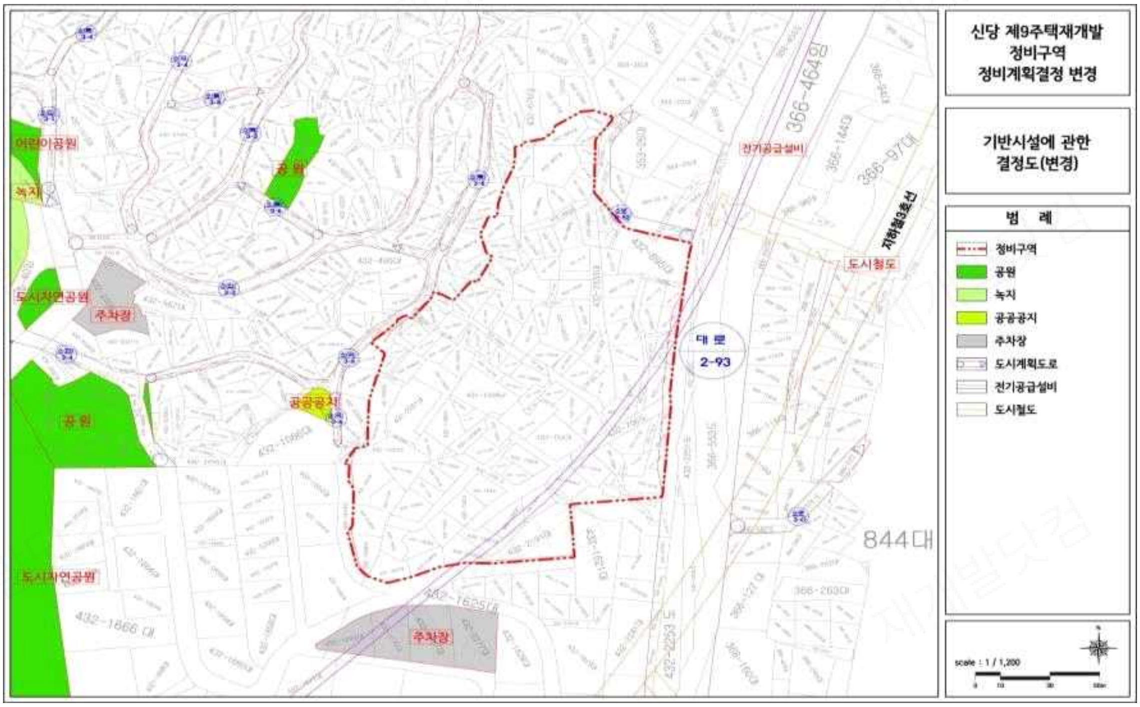

4. 정비계획 결정도(기정/변경)

■ 기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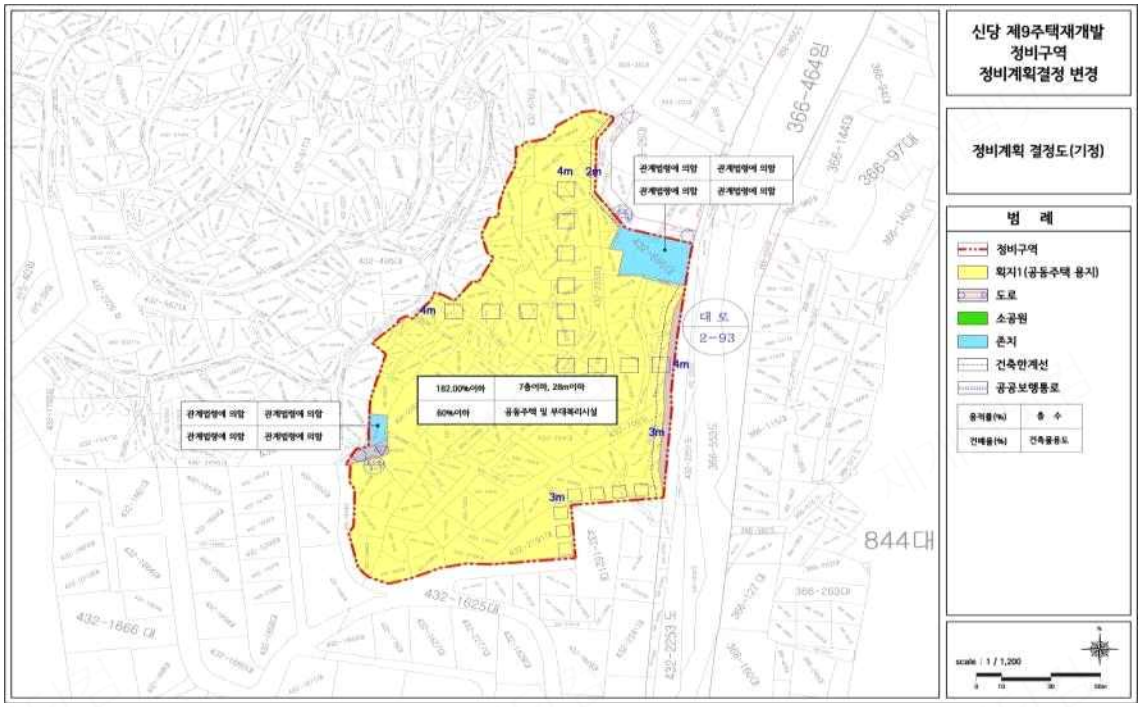


■ 변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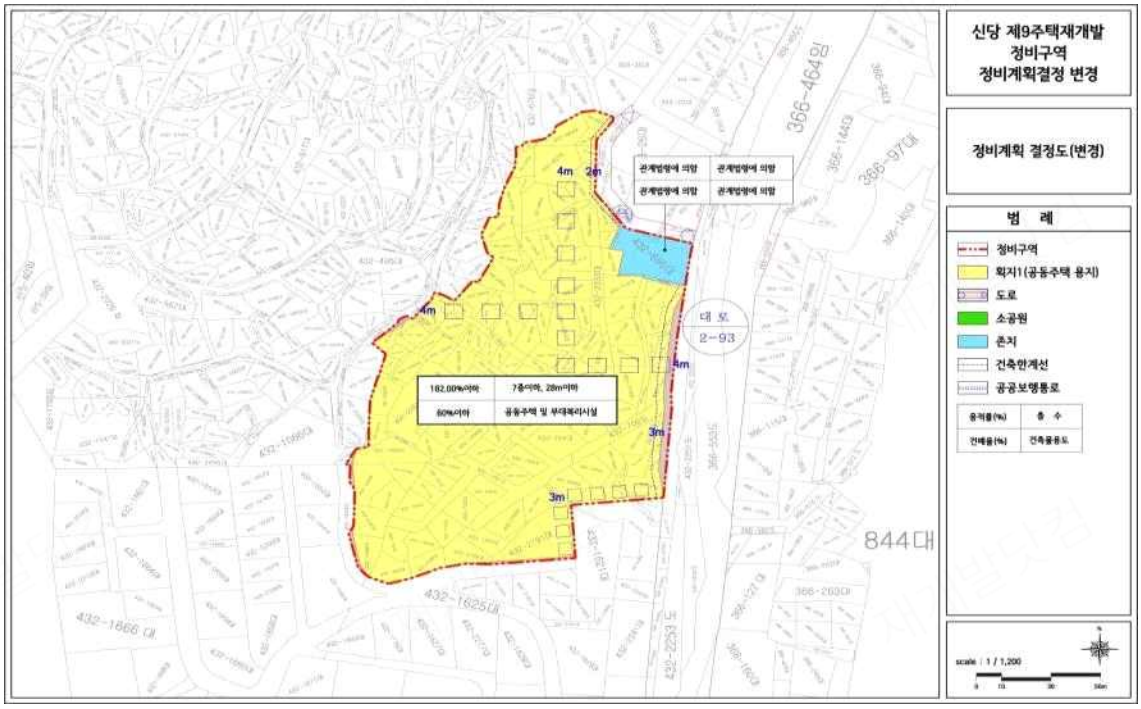

5. 지구단위계획 결정도(기정/변경)

■ 기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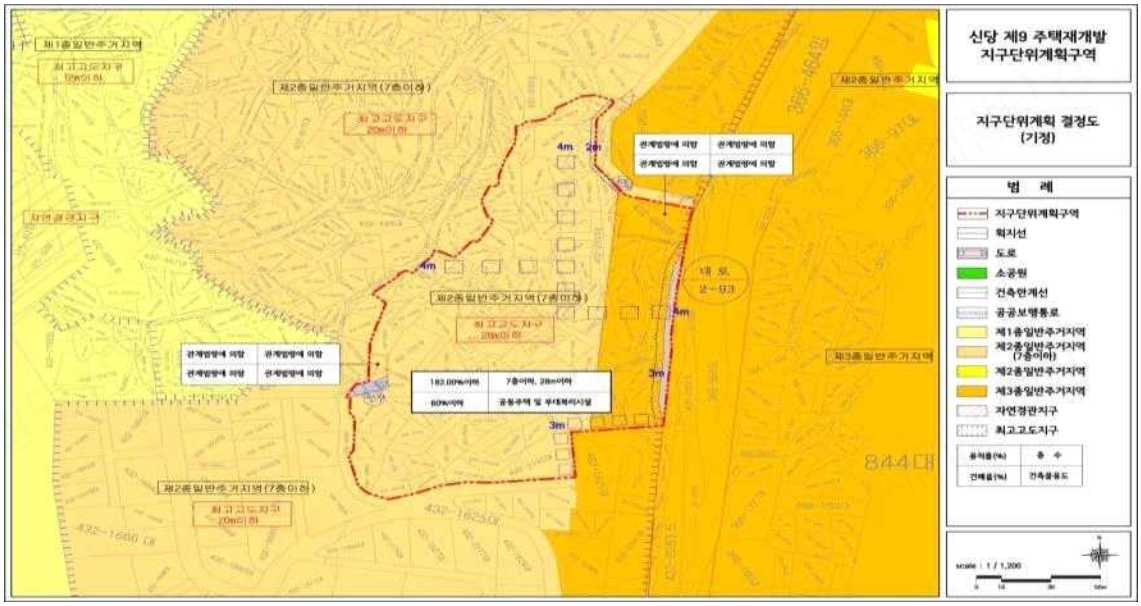


■ 변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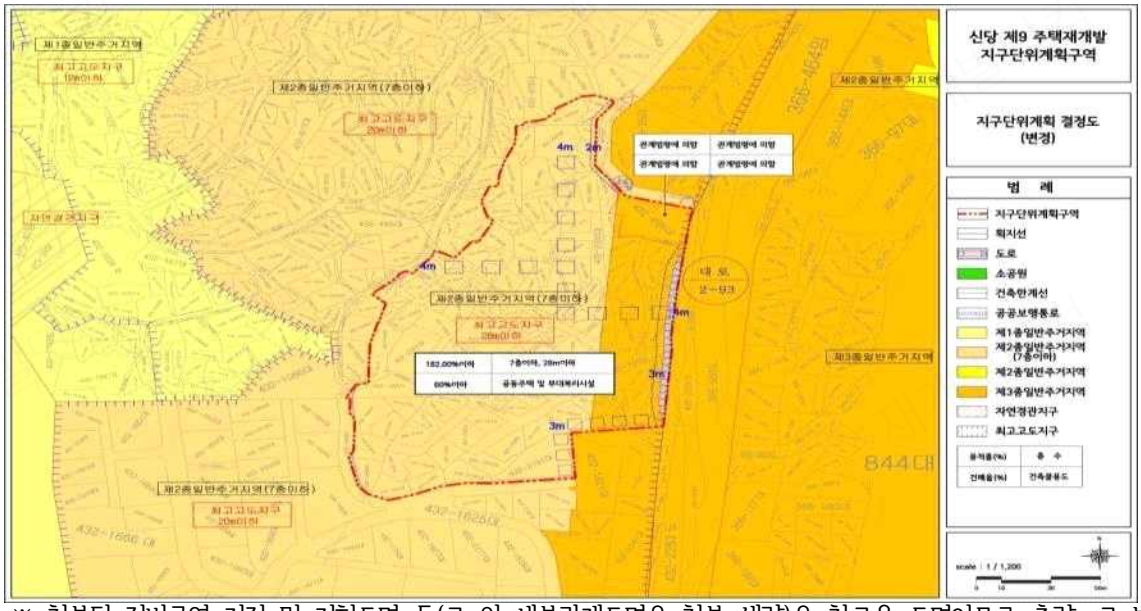


※ 첨부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등(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 생략)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,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※ 본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은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7조 제1항에 따라 지구단위 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(도시·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지침 1-3-3), 같은 법 제84조에 따라 정비사업 준공 후 중구청장이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